

# 대학원 학생정원 및 학생조교 운영세칙

제정 1998. 3. 1      개정 2001. 6. 1      개정 2011. 9. 1  
개정 1999. 8.31      개정 2006. 5. 4      개정 2014. 9. 1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학원 학생정원 및 학생조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본 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학과의 대학원 학생정원) ① 본교 각 학과의 대학원 학생정원은 본 대학교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된 연도별 학생정원 범위내로 한다.

② 대학에서는 매년 각 학과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가능 정원만을 각 학과에 배정하고 그 외 정원은 학과의 지원능력에 따라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각 학과에서는 매년 대학에서 배정한 정원이외의 증원소요를 결정 7월말까지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4조(학생조교의 임용) 학생조교 운영부서에서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학생을 학생조교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9.1.)

제5조(학생조교수당) 학생조교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되는 학생조교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4.9.1.)

1. 학생교육조교수당(Teaching Assistantship)은 대학원생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인건비를 말한다.
2. 학생연구조교수당(Research Assistantship)은 대학원생이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인건비를 말한다.
3. 학생행정조교수당(Staff Assistantship)은 대학원생이 행정업무 지원(근로포함)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인건비를 말한다.

제6조(학생교육조교의 배정) 학과별 학생교육조교의 배정은 기초과목, Service 과목, 실험실습과목 등에서의 학생조교 소요, 교수들의 연구업무 부담정도에 따른다.

제7조(학생조교수당 지급) ① 학생조교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

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4.9.1.)

② 학생연구조교수당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관리규정을 우선적용하여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운영세칙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4.9.1.)

제8조(학생조교의 임용 및 장학금 지급의 제한) (삭제: 2014.9.1.)

제9조(학생조교의 기타 재정지원의 수혜) 대학원생은 학생조교수당을 지급받는 동시에 내·외부로부터 기타 장학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5.4.)(개정: 2014.9.1.)

제10조(삭제)

제11조(초과등록자의 학생조교수당) ① 초과등록자라 함은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통합과정 10학기를 초과하여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06.5.4)

② 초과등록자의 학생조교수당은 교비로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교비연구기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4)

③ (개정: 2006.5.4.)(삭제: 2014.9.1.)

제12조(준용)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8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전 규정인 대학원생 학생정원 및 학생조교 운영규정은 이 세칙으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